참고 2 | 결격사유

-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「인사규정」제19조 -

제19조(결격사유)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.

- 1. 피성년후견인
-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- 6. 법령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
- 7. 전직 근무기관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제355조 내지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,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8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,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74조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
- 9. 미성년자에 대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- 10.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 또는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- 11. 남성의 경우,「병역법」에서 정한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
- 12. 채용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았거나 채용건강검진 등에서 채용 예정 분야의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정된 자. 다만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용할 수 있다.
 - 가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4조제1항제4호, 제6호, 제12호, 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・공상군경・4.19혁명부상자・공상공무원・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.
 - 나.「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에 따른 의상자
 - 다. 「장애인복지법」제2조에 따른 장애인
- 13.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
- 14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